

# 선수위원회 규정

**제 1 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대한육상연맹(이하 "연맹"이라 한다) 정관 제37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선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 2 조(목적)** 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,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 조(적용범위)** 본 연맹에 등록된 각급 운동경기부(팀)의 선수 및 지도자(코치)에 적용한다.

**제 4 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 한다.

1. 각종 국내외대회 관련,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
2.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/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3. 선수 권익 침해(선수 폭력·성폭력행위) 지도자 또는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
4.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
5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6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

## 제 5 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1. 위원장 1인
  2. 부위원장 1인
  3. 위원 7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사무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.

**제6 조(위원의 위촉)** 위원장은 회장이 가급적 이사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 및 임명한다.

## 제7조(위원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## 제8조(임기)

- ①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 10 조(회의 소집)**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1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**제12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13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## 제14조(스포츠인권익센터 설치)

- ① 연맹은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익센터(이하 "권익센터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연맹은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(인터넷주소), 전화번호, 담당자 등 필요

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#### 제15 조(조사대상)

- ① 선수가 지도자(코치)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와 성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연맹에서 설치 운영하는 권익센터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.
- ② 누구든지 스포츠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진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 다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수 권익 침해(선수 폭력, 성폭력행위)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.

#### 제 16 조(조사 및 구제절차)

- ①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본 연맹은 1차 조사기관이며 대한체육회는 2차 조사기관이다.
- ②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.
  1. 연맹은 국가대표선수,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연맹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.
  2. 시·도체육회는 당해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.
  3. 연맹과 시·도체육회 간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소관기관을 결정한다.
- ③ 연맹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결과를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연맹에 신고 접수된 사안,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기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## 제17조(징계)

-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의 결한다.
  1.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
    - 가. 1차 적발 : 5년 이상의 자격정지
    - 나. 2차 적발 : 10년 이상의 자격정지
    - 다. 3차 적발 : 영구 제명
  2. 폭력행위를 한 선수
    - 가. 1차 적발 : 3년 이상의 선수 자격 정지
    - 나. 2차 적발 : 5년 이상의 자격정지
    - 다. 3차 적발 : 영구 제명
  3.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
    - 가. 1차 적발 : 영구제명
  4. 성폭력범죄 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
    - 가. 지도자
      - 1차 적발 : 5년 이상의 자격정지
      - 2차 적발 : 10년 이상의 자격정지
      - 3차 적발 : 영구제명
    - 나. 선수
      - 1차 적발 : 3년 이상의 자격정지
      - 2차 적발 : 5년 이상의 자격정지
      - 3차 적발 : 영구제명
  5. 위원회 및 소관 위원회는 이 규정 제16조의 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본연맹 상벌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징계종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  6. 위원회는 이 규정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선수 권익 침해는 인정되나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이를 일반징계로 관장하고 있는 해당단체 소관위원회에 이관하여 일반징계에 준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.
- ②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 부터 발생한다.
- ③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대한체육회와 징계대상자 소속 시·도육련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

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.

**제18조(재심청구)** 제17조 제4항에 따라 1차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직접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대한체육회의 재심기간 중에도 본 연맹 선수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.

**제19조(사후관리 및 행정처리)** 본 연맹 선수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비밀누설금지)** 스포츠인권 향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·피해자 및 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부 칙<2010.10.14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0.10.14)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선수보호위원회,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수보호위원회, 선수자격심의위원회는 폐지되며 이 규정에 의한 선수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**제3조(대한체육회 규정 준용)** 본 규정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<2013.9.12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(2013.9.12)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6.6.21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(2016.6.21)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